

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

의안 번호	27
----------	----

제의연월일 : 2014. 7. 3.
제 의 자 : 인천광역시의회의회장

□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2014. 7. 3 (목)

<참고사항> ----- **관련근거**

- 지방자치법 제56조(위원회의 설치)
 -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설치,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
- 지방자치법 제57조(윤리특별위원회)
 - 의원의 윤리 및 징계 심사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둠
-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조(위원의 선임)
 - 상임 및 특위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

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(안)

연번	성 명	비 고
1	정 창 일 의원	의 장 추천
2	황 흥 구 의원	“
3	유 제 흥 의원	“
4	박 영 애 의원	“
5	유 일 용 의원	기획위 추천
6	공 병 건 의원	문복위 추천
7	김 진 규 의원	산경위 추천
8	신 은 호 의원	건교위 추천
9	이 영 환 의원	교육위 추천